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8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이영실,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김창원,
김화숙, 박기재, 이승미,
조상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아동을 보호·양육해야 하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인권 등”을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교육) 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 ·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u>인권</u> 등에 대한 교육을 <u>실시할 수 있다.</u></p> <p>④ · ⑤ (생 략)</p>	<p>제24조(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u>----- ----- <u>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